

2023년 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

「ICT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

「2023년도 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」의 일환으로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「ICT 창업기업 사업화지원」에 참여할 대전 지역 내 ICT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3년 3월 28일

(재)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** : IC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및 민간연계 투자 네트워크를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지원

□ **지원대상** : 공고일 기준, 창업 후 3년 이내 ICT\* 초기창업기업

\* 메타버스,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로봇, 자율주행차,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자금(최대 4,500만원), IR 네트워킹 등

사업화 자금		IR 네트워크
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최대 4,500만원 지원	+	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하는 창업 투자 네트워킹 활동 지원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3년 11월 30일까지

□ **선정규모** : 4개사

## 2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자격

- ①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를 대전에 둔
- ② ICT분야 아이디어 및 기술로 사업하고자 하는
- ③ 공고일(2023. 3. 28.) 기준, 창업 3년 이내인 기업

- 신청가능 업력 : 2020년 3월 29일 ~ 2023년 3월 28일
-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### □ 신청 제외 대상

-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#### < ①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#### < ②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-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(일반유희주점업, 무도유희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)
- ④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과제 수행기관,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⑤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과제 수행기관, 우리원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-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- 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- ⑧ 기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**선정기업 의무 및 역할**

- 선정기업은 **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을 위한 1인 이상 신규인력고용**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< 신규인력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>
- 지원과제 수행을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
- 공고일 기준 1년 이내, 사업주가 해당 채용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신규채용인력이 타 정부지원사업(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된 경우
-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국가법령에 위배된 경우
-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

- 선정기업은 「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」 관리지침, 협약서 등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대응자금(현금)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# 3 지원내용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3년 11월 30일까지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자금, IR 네트워킹 등

구 분	지 원 세 부 내 용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<b>사업화 자금 최대 4,500만원 지원</b></li> <li>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변동 가능</li> <li>** 사업화 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</li> <li>• <b>총사업비 = 지원금 90% 이하 +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* 10% 이상</b></li> <li>    &lt;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지원금 4,500만원인 경우) &gt;</li> </ul>													
	<b>&lt; 총 사업비 구성 예시 &gt;</b>													
	- 총 사업비 구성 : 지원금 + 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총 사업비</th> <th>지원금</th> <th>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0%</td> <td>총 사업비의 90% 이하</td> <td>총 사업비의 10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	100%	총 사업비의 9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						
	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											
	100%	총 사업비의 9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										
	- 협약체결 후 사용가능한 총 사업비(예시)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총 사업비</th> <th>지원금</th> <th>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,000만원</td> <td>4,500만원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tr> <td>100%</td> <td>90%</td> <td>1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	5,000만원	4,500만원	500만원	100%	90%	10%				
	총 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대응자금(현금)											
	5,000만원	4,500만원	500만원											
100%	90%	10%												
<b>&lt; 사업화 자금 비목 &gt;</b>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비 목</th> <th>비목 정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료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외주용역비</td> <td>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>기계장치 임차비 (공구·기구, SW 등)</td> <td>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 * <b>협약기간 내 임차비용만 인정, 구매 불가</b></td> </tr> <tr> <td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>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</td> <td>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<b>대표자, 대표자 친족관계 인건비 지급 불가</b> ** <b>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%까지만 산정 가능</b></td> </tr> <tr> <td>지급 수수료</td> <td>•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임차비, 회계감사비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비 목	비목 정의	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기계장치 임차비 (공구·기구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 * <b>협약기간 내 임차비용만 인정, 구매 불가</b>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<b>대표자, 대표자 친족관계 인건비 지급 불가</b> ** <b>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%까지만 산정 가능</b>	지급 수수료	•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임차비, 회계감사비 등
비 목	비목 정의													
재료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
외주용역비	•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
기계장치 임차비 (공구·기구, SW 등)	•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, 비품을 임차하는 비용 * <b>협약기간 내 임차비용만 인정, 구매 불가</b>													
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•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·등록관련 비용													
인건비	•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<b>대표자, 대표자 친족관계 인건비 지급 불가</b> ** <b>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60%까지만 산정 가능</b>													
지급 수수료	• 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임차비, 회계감사비 등													
※ 자세한 비목별 세부기준은 「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」 관리지침 참고														
IR 네트워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투자 제반 활동 지원</li> <li>• 다양한 협력기관과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</li> <li>• 서비스 개발 및 창업 노하우 멘토링 연계</li> </ul>													

## 4 신청 및 접수

□ **공고기간** : 2023. 3. 28.(화) ~ 4. 13.(목)

□ **신청기간** : 2023. 3. 28.(화) 09:00 ~ 4. 13.(목) 18:00까지

### 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** ‘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’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
※ “제출완료”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취소 후, 다시 제출 가능
- ②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,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 및 삭제 불가

□ **신청방법** :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온라인 신청(pms.dicia.or.kr)

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이용안내	
① <b>회원가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PMS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pms.dicia.or.kr">http://pms.dicia.or.kr</a>) 접속</li> <li>○ 약관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확인, 본인인증, 회원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</li> </ul>
② <b>사업신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그인 후 [모집공고] 메뉴에서 <b>2023 ICT 창업기업 사업화지원 [신청]</b> 클릭</li> <li>○ 총괄책임자, 실무담당자, 지원정보, 사업비, 기업실적 등 정보 입력 후 [저장] 클릭</li> <li>○ 모든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 전부 업로드 후 [저장] 클릭</li> <li>○ 최종 확인 후 [신청] 버튼을 누르면 <b>접수완료</b></li> </ul>

□ **제출서류**

구분	제출서류	서식 / 발급처	비고
1	(필수)사업계획서	붙임1 제1호 서식	
2	(필수)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	붙임1 제2호 서식	
3	(필수)사업자등록증		
4	(필수)납세증명서(국세완납증명) / 최근 1개월 이내 발급	홈택스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	민원증명 - 즉시발급 국세증명
5	(필수)지방세 완납증명서 / 최근 1개월 이내 발급	정부24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	
6	(필수)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※ 조회기간: 최근 1년 / 발급범위: 전체근로자 / 월평균보수: 표시	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<a href="http://total.kcomwel.or.kr">total.kcomwel.or.kr</a>	사업장 - 증명원 신청/발급
7	(해당시)법인등기부등본 / 최근 1개월 이내 발급	인터넷등기소 <a href="http://www.rios.go.kr">www.rios.go.kr</a>	법인사업자만 제출
8	(해당시)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	중소벤처24 <a href="http://www.smes.go.kr">www.smes.go.kr</a>	해당기업만 제출

## 5 평가 및 선정

□ **평가절차** : 총 3단계 평가(서류→발표→현장)를 통해 최종 선정

### 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현장평가
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	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2배수 내외 선정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30분 이내)	창업기업 사업장 현장 실사
4월 3주	4월 3주	4월 3주	4월 4주

**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**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·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평가방법

1) 요건검토 :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2) 선정평가(서류→발표→현장)

#### ○ 서류평가

- 외부전문가 5~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를 평가
-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,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

#### ○ 발표평가

- 외부전문가 5~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발표자와 대면 평가
- 서면평가 점수는 발표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, 제품·서비스 개발 동기,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또는 사업 신청자)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·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

\* 평가시간 : 30분 이내(발표 15~20분 이내 + 질의응답)

\* 평가방법 : 대면평가 원칙,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

#### ○ 현장평가

-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현장평가 실시, 사업장 현장 방문 확인

□ **평가지표**

○ 서류·발표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문제인식 (20점)	•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(문제인식), 해결방안(필요성) 등	20점
실행가능성 (30점)	•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(개선)방법, 경쟁력 확보 방안 등	30점
성장전략 (30점)	•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	30점
팀(기업) 구성 (20점)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 기술역량과 노하우, ESG 경영 도입계획 등	20점
<b>소계</b>		<b>100 점</b>
우대조건 (각 1점)	• 우대기업인증서(확인서 제출) ※ 이노비즈기업, 메인비즈기업, 성과공유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, 장애인기업	1점
	• 근로자친화 인증기업(인증서 제출) ※ 가족친화인증,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,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대전 고용우수기업, 좋은일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	1점
	• 최근 1년 이내 1억원(현금)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	1점
	• 최근 2년 이내 창업관련 지자체 및 출자출연기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	1점
	• 2021 D-린스타트업 시장검증 지원사업 2022 창업아이디어 시장검증 지원사업 '우수' 이상 판정 기업 ※창업아이템 핵심요소 일치 필수	1점
<b>합계</b>		<b>100 + 5 점</b>

※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(100+5점 만점 기준) 선정 제외

○ 현장평가 기준

평가항목	적정	미흡
사업장 보유	- 사업장 보유	- 사업장 미확보
참여인력 확보	- 사업계획서의 참여인력 확인	- 사업계획서의 참여인력 확인불가

※ 심사결과 평가항목 중 한 개 이상 '미흡' 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**최종선정** :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현장평가 후 지원대상 창업기업 선정

\*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□ 운영일정



※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(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)

**6 유의사항**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 관리 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

□ 공통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,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, 평가대상 제외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일 과제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(동시수행 불가)



## 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또는 사업 신청자)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진흥원은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를 위한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사업지원금은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급될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등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사업비 중지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협약 해지 조치 될 수 있음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

## 7 신청문의

□ **사업문의** : (재)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진흥단 오주현 주임

☎ 042-479-4163 / E-mail : [jhoh@dicia.or.kr](mailto:jhoh@dicia.or.kr)